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9
----------	-----

제출년월일 : 2005. 4. 11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사유

「지방세법」의 개정(2005.1.5)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조문을 삭제하는 등 감면조례 내용을 일부수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규정을 삭제 또는 정비함(안 제2조~안 제4조, 안 제5조~안 제6조, 안 제8조~안 제9조, 안 제11조~안 19조, 안21조~안 제22조, 안 제24조~안 제25조, 안 제27조)
- 나.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의 변경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188조에 의거 세율을 인하함(안 제20조)
- 다. 선물거래소 등에 대한 감면은 선물거래소 설립이 5년이 경과되어 감면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폐지하고자 함(안 제2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7조, 제9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입법예고 : 2005. 3. 11 ~ 3. 31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5조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고, 동조제1항제2호중 “건축물로서”를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로, 동조제2항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9조중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으로 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동조제2항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13조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제23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14조 제목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을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동조중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을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으로 하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고, 동조제1호중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시장정비사업”으로 하며,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하고, 동조제2호중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시장정비사업”으로 한다.

제15조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로 한다.

제17조중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한다.

제18조중 “재산세·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20조중 “1,000분의 3”을 “1,000분의 1.5”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동조제1항제1호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동조제1항제2호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동조제2항 중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4조의2”를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4조의3”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25조중 “부동산”을 “부동산 및 선박”으로 각각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7조중 “종합토지세”를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을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본문중 제2조, 제4조, 제6조, 제12조, 제16조, 제19조제1호 내지 제4호, 제22조, 제24조제1항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명 “부산광역시사하구세감면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4조중 “민법”을 “「민법」”으로,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한다.

제5조중 “노인복지법”을 “「노인복지법」”으로 한다.

제6조중 “평생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한국노동교육원법”을 “「한국노동교육원법」”으로,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으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도서관 및 독서 진흥법」”으로,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육성법」”으로 한다.

제7조중 “교육기본법”을 “「교육기본법」”으로 한다.

제8조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부산광역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를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로 한다.

제9조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한다.

제11조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철도법”을 “「철도법」”으로,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12조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13조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5조중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16조중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시행령”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17조중 “화물유통촉진법”을 “「화물유통촉진법」”으로 한다.

제18조중 “전쟁기념사업회법”을 “「전쟁기념사업회법」”으로 한다.

제19조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20조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제21조중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동조제2항중 “지방세법시행규칙”을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2조중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23조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24조중 “부산교통공단법”을 “「부산교통공단법」”으로 한다.

제25조중 “항만공사법”을 “「항만공사법」”으로 한다.

제30조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현행	개정안
<p>제15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 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를 업무구역으로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이하 이 조에서 "신용보증재단"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p>	<p>제15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 ----- ----- ----- ----- ----- ----- ----- ----- -----</p>
<p>제17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17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 ----- ----- ----- ----- ----- ----- ----- ----- -----</p>
<p>제18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p>	<p>제18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 ----- ----- ----- ----- ----- ----- ----- ----- -----</p>

현행	개정안
<p>제27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종합 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p> <p><신설></p>	<p>제27조(직접사용의 의미)-----토지에 대한 재산세-----</p> <p>-----</p> <p>-----</p> <p>-----</p> <p>제30조의2(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을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p>